



의료보험GUIDE (XVII)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험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 개정

보건사회부 훈령 제617호에 의거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행정처분기준중 일부분구를 개정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있으시기를 바랍니다...<편집부>

(별표) 1. 조사대상기간중의 월평균 총진료비가 1,500만원미만인 요양기관의 경우 위반사항란중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를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불가능하게 한 때"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1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험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3 조(행정처분기준) (별 표)		제 3 조(행정처분기준) (별 표)	
1. 조사대상기간중의 월평균 총진료비가 1,500만원 미만인 요양기관의 경우		1. (현행과 같음)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요양급여기준에 명시된 관계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요양기관 지정취소 1월	○...비치하지 아니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불가능 하게 한 때	(현행과 같음)

○약가개정 일부통보에 의거 2%염산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에 대해 일부 혼동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진료비명세서에 청구시 제조회사명과 에피네프린함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표시하지 않을시는 최저가인 133원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품 명(에피네프린함량)	약 가	비 고
유한 2%리도카인주(1: 5만)	—	'91. 3. 1일부로 삭제 급여안함
유한 2%리도카인주(1: 8만)	138원	'91. 2. 1일부로 신설 급여함
유한 2%리도카인주(1: 10만)	133원	'91. 1. 1일부로 개정 급여함
광명 2%리도카인주	138원	전품목 급여함

- 예) 유한 2% 리도카인주(1: 8만) : 138원
유한 2% 리도카인주(1: 10만) : 133원
광명 2% 리도카인주(1: 8만) : 138원
광명 2% 리도카인주(1: 10만) : 138원

- 의료보험 질의회신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진료비 청구에 있어 혼동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아오니 이를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연구검토하여 협회지를 통해 회신토록하여 회원여러분들의 의료보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주)신흥의 사후관리신고는 아래의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56-4903/773-5871

전화를 주실때는

- 고장상태 및 고장부위
- 부품의 교환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A/S팀이 사전에 부품을 준비해서 방문하게 되므로 고장부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